

의안번호	2323	【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검토보고서		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8. 2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8. 22.(목)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9. 3.(화)

2. 제안이유

-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조직개편 변경사항에 따라 위원 수 변경으로 자주 개정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(안 제4조제3항)
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2조)

4. 근거법규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변경사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 변경으로 인하여 잣은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 범위)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 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 - 2의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 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 4. 「병역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 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 6. 조세(租稅)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